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의안 번호	1868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1) 대상시설

가) 재위탁 대상시설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모(명,㎡)		현 위탁체	계약 만료일
			정원	연면적		
재 위 탁	래미안 리버젠	매봉길 15 래미안리버젠 관리동(옥수동)	102	650	강효진	2023.2.28
	금삼	금호산길 14 (금호2-3가동)	85	783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5.19
	독서당	매봉길 17 래미안리버젠 2단지(옥수동)	26	117	남영숙	2023.5.19
	성삼보듬이 나눔이	광나루로 242-17 (성수2가제3동)	45	298	유경희	2023.5.19

나) 재계약 대상시설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모(명, m ²)		현 위탁체	계약 만료일
			정원	연면적		
재 계 약	도선	왕십리로30길 17-1 (왕십리도선동)	65	287	백희정	2023.2.28
	서울숲	금호로 17 서울숲푸르지오2차 관리동(금호4가동)	45	286	장미순	2023.2.28
	센트라스아띠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 101동 (왕십리도선동)	49	320	박춘화	2023.2.28
	이편한세상 금호	금호로 140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아파트(금호1가동)	43	226	정원정	2023.2.28
	텐즈아이	무학로 33 텐즈힐1단지 114동 (왕십리도선동)	70	378	안미순	2023.2.28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금호로 40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관리동(금호4가동)	60	331	김미경	2023.2.28
	센트라스라운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 129동 (왕십리도선동)	28	157	김운영	2023.3.31
	맑은샘	매봉길 51 (옥수동)	68	561	선혜진	2023.5.13
	트리마제	왕십리로 16 트리마제 관리동 (성수1가제1동)	34	200	윤혜영	2023.5.14

2) 위탁기간: 계약만료 익일부터 5년

3) 위탁운영체 선정: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

가) 재위탁: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체 선정

나) 재계약: 현 위탁운영체의 적격 여부 심의

나. 주요 위탁내용

1)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기자재, 교재교구, 기타 물품 등)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아동 입소·상담, 보육운영계획 수립, 조직·인사·회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민간영역의 보육시스템 및 체계를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재원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 조치(2021년 지원예산)

- 래미안리버젠(414백만 원), 금삼(329백만 원), 독서당(237백만 원),
성삼보듬이나눔이(234백만 원), 도선(328백만 원), 서울숲(249백만 원),
센트라스아띠(323백만 원), 이편한세상금호(235백만 원),
텐즈아이(373백만 원),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287백만 원),
센트라스라운(242백만 원), 맑은샘(345백만 원), 트리마제(298백만 원)

[참고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① 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시설관리 사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